주민감사청구

감 사 보 고 서

- 담양군 주민감사 청구사항 -

2023. 6.

전라남도
JeollaNamdo

(감사관실)

□ 감사개요

○ 감사배경

- 담양군 주민 ○○○ 외 800명(유효서명 753명)은 '담양군수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인·허가 사무'에 대하여 2023. 2. 20. 주민감사를 청구

- 전라남도는 2023. 4. 14. 유효서명인 수, 담양군수의 권한사무 등 청구요건을 심의 후 감사청구를 수리하였고, 심의 결과를 청구인과 담양군에 통보하고 감사를 실시

○ 감사대상 및 범위

- 담양군을 대상으로, 담양군수의 ○○○○○○○(주)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후
  ① 동일 부지 내 증축허가 ② 구내식당 영업기간 연장허가
  ③ 지하수 관리 연장허가 ④ 하천점용 연장허가 사무
  ⑤ 공장부지 내 개발제한구역(○○면 ○○리 ○○-○) 물건 등의 적치에 대한 담양군 사무

□ 감사결과

1 동일 부지 내 증축 허가

□ ○○○○○○○(주) 위법건축에 따른 담양군의 시정명령 후 증축이 추가적으로 일어난 사항은 부당하며, 담양군수의 새로운 증축허가는 부당하다는 사항에 대해

○ 담양군의 ○○○○○○○(주)에 대한 건축(증축)허가는 2006. 11. 3. 폐기물처리시설(○동, 0,000.00㎡) 건축허가(2007. 5. 31. 사용승인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 완료) 이후 추가적인 건축(증축)허가 건 부존재

○ 다만, 2018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건축물 점검을 추진하고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중

- 2차~4차(2020년~2021년) 점검 시 적발한 위반건축물 총 50건을 시정명령하여 34건 원상복구 완료하고, ○○○○○○(주)의 시정명령취소소송으로 16건 중 대법원 판결 결과(2023. 2. 23.) 담양군 5건 패소, 2건 각하, 9건 승소

- 승소한 9건 2차 시정명령(2023. 3. 24.) 후 1건 원상복구, 3건 철거허가 검토 중, 5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(의견제출기한 2023. 6. 30.)

- 5차 점검(2023년) 시 적발한 위반건축물 총 8건 시정명령(2023. 3. 31.) 후 1건 완료, 7건은 ○○○○○○(주)의 의견제출, 담양군 법률 자문 의뢰(2023. 5. 31.) 중으로 자문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 예정

☞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후 추가 건축허가 부존재
☞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「건축법」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 중
⇒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

2 구내식당 영업기간 연장 허가

□ ○○○○○○(주) 위법건축에 따른 담양군의 시정명령 후 구내식당의 영업기간이 도래한 경우 연장허가는 불가하다는 사항에 대해

○ ○○○○○○(주)은 2020. 7. 12. 구내식당 영업허가 후 2023. 6. 5.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,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는 영업허가 후 폐업 또는 관련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등을 제외하고 별도 영업기간이 없음

☞ 구내식당 영업기간 도래 및 연장허가 처분 부존재
⇒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

3, 4 지하수 및 하천점용 연장허가 사무

□ ○○○○○○(주) 위법건축 시정명령 중 지하수 개발·이용 및 하천점용 연장허가는 부당하다는 사항에 대해

○ 「건축법」 제79조 제2항에 허가권자는 허가·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·면허·인가·등록·지정 등을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,

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

○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후 이행기간 내 완료된 54건은 위반건축물 미해당 되며, 시정명령취소소송이 진행된 21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집행정지되어 연장허가 당시 시정명령 미이행 건축물에 미해당

- 다만, 대법원 판결 결과 담양군이 승소한 9건 중 2차 시정명령 후 미이행으로 강제이행금 부과한 4건은 관련부서(관광과, 투자경제과, 건설과, 재난안전과, 환경과, 물순환사업소, 대전면)에 통지(2023. 5. 31.)

※ 2023. 6. 5. 감사일 현재 관련부서에 ○○○○○○의 신규·갱신 허가 등의 신청접수건 없음

【지하수 개발·이용 연장허가 적정 여부】

□ 담양군은 「지하수법」 제7조 등에 따라 ○○○○○○(주)의 지하수개발·이용 허가(최초 2011. 9. 24.) 후 5년마다 연장허가하고 사후 관리 중(최근 연장허가일 2021. 9. 8.)

○ 「지하수법」 제7조 등에 지하수 개발·이용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, 군수는 지하수 개발·이용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을 연장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

○ 또한 신청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서*를 제출하고, 군수는 '지하수영향조사서 항목·조사방법 및 평가기준'**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

* 지하수 개발·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예측하는 조사
** ① 수문지질 현황 및 개발가능한 원수의 양, ②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 산정, ③ 현지조사를 통한 원수의 수질 상태

○ ○○○○○○(주)은 2021. 8. 13. 지하수 개발·이용 연장신청서를 지하수영향조사서와 함께 담양군에 제출

○ 이에, 담양군은 2개 기관(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부,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○○○ 명예교수)에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를 요청(2021. 8. 17.) 하고, 평가기준에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 연장허가* 수리

* 허가일 : 2021. 9. 8.(연장기간 2021. 9. 24. ~ 2026. 9. 23)

【하천점용 연장허가 적정 여부】

□ 담양군은 「하천법」 제33조 등에 따라 ○○○○○○(주)의 하천점용허가

(최초 1995. 1. 5.) 후 5년마다 연장허가하고 사후 관리 중(최근 연장허가일 2020. 1. 5.)

○ 「하천법」 제33조 등에 하천시설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, 군수는 하천점용이용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을 연장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

○ 또한 ①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② 골재 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④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

○ 한편 ○○○○○○(주)은 2019. 11. 19. 관로매설 및 공작물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천점용기간 연장신청서를 담양군에 제출하고, 이에 담양군은 허가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허가(2019. 12. 9.)* 수리

* 허가일 : 2019. 12. 9.(연장기간 2020. 1. 5. ~ 2025. 1. 4)

☞ 「지하수법」 및 「하천법」에 따른 지하수 개발·이용 및 하천점용 연장허가에 대한 담양군 사무의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함

☞ 시정명령 미이행 건축물은 「건축법」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로 다른 법령의 인허가 제한 등을 해당 부서에 통보함

*** 시정명령 미이행 건축물과 관련한 신규·갱신 허가·인가·등록·지정 등의 신청 시 각 법령에 따라 검토 필요**

⇒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

5 공장부지 내 개발제한구역 물건 등의 적치에 대한 담양군 사무

□ 공장부지 내 개발제한구역(○○면 ○○리 ○○-○) 물건 등의 적치에 대한 담양군의 사무는 부당하다는 사항에 대해

○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 제1항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각호 및 제3항의 경우에 한해 허가 또는 신고로 할 수 있다고 규정

○ 또한 같은법 제12조 제5항에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*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

*「시행규칙」 제12조 별표4 8. 기존 건축물의 대지(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) 안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

○ 담양군은 ○○○○○○○(주)이 적법한 공장부지 내에 한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제12조 제5항에 해당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

- 다만,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와 관련하여 '경미한 행위'의 범위를 국토교통부에 질의(2023. 4. 12.질의, 2023. 6. 5. 현재까지 국토부 답변 미회신)

○ 한편, 담양군은 ○○○○○○(주)의 부설주차장 내 물건 적치행위에 대해 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4 위반으로 시정명령(2023. 3. 24.)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(의견제출기한 2023. 7. 7.)

☞ 「개발제한구역법」에 따른 공장부지 내 물건 등을 적치 행위에 대한 담양군 사무의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함

☞ 다만, 부설주차장 내 위법한 물건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「주차장법」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 중

⇒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